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45
2025.9.1.



이주의 초점

“역직구 키운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정책 발표

관세행정 안내

한·캐나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제6815.10호)

판례 동향

실제지급금액에 대한 관세평가 판례해설

품목분류동향

품목분류해설

미국의 수입조정과 관련한 한국 수출품의 HSK 코드 분석 ④편 구리제품

세번 바로잡기

사료 속 미량광물질 ‘글리신 아연 배위화합물’

상식 밖의 상품학

해열·해독효과로 멸종위기 ‘코뿔소 뿔’

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인	이종우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 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 케 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5년 9월 1일(통권 제2145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04 “역직구 키운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정책 발표

07 Weekly News

관세행정실무해설

11 관세행정안내

한·캐나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제6815.10호)

21 질의응답사례

간이정액환급

판례동향

23 관세판례해설

실제지급금액에 대한 관세평가 판례해설

품목분류동향

50 품목분류해설

미국의 수입조정과 관련한 한국 수출품의 HSK 코드 분석 ④편 구리제품

62 세번 바로잡기

사료 속 미량광물질 ‘글리신 아연 배위화합물’

64 상식 밖의 상품학

해열·해독효과로 멸종위기 ‘코뿔소 뿔’

최신개정법령

66 공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68 입법예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역직구 키운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정책 발표

신규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 상향·확정가격 신고기한 연장 등 포함



이명구 관세청장과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출처 : 관세청)

관세청이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하에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공개했다. 전자상거래 수출이 우리 수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수출신고 체계 개선·소상공인 및 초보기업 지원·해외 통관환경 대응·수출 사후관리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간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 수출은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올해 6월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20%, 금액 기준 22% 성장했다(2024년 2.880만 1,000건·13억 1,900만달러 → 2025년 3,455만 7,000건·16억 400만달러).

■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위한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이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고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을 공개했다. ‘수출 e-로움’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공개했다(출처 : 관세청)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체계 개선부터 해외 진출 및 통관 대응까지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출신고 체계가 개선된다.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기존 400만원에서 최고 한도인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인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통관 데이터를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해, 국제우편을 이용해 수출할 때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수출실적 인정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확정가격 신고기한도 연장한다. 상품을 해외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 선별, 포장, 배송, 사후 교환 등을 물류센터에서 대행하는 풀필먼트 수출기업은 다품종 소량 판매라는 특성상 가격 정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기존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수출목록변환 신고 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해외 구매자의 주문번호만으로도 수출신고필증 및 적재 이행 내역을 조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수출 초보 기업의 부담 경감과 해외 진출에도 초점을 맞췄다.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게는 과태료 50% 경감 혜택을 신설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입점 기업에 서류제출 대상 선별 제외, 검사 비율 하향 조정 등 통관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국가별 수출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의 HSK 10단위 코드를 제공해 기업들이 목록통관 신고 시 정확한 품목분류(HS) 번호를 기재하도록 유도해 기업의 통관 오류 리스크를 줄인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출처 : 관세청)

마지막으로 해외 통관 환경 대응 역시 강화된다. 기업들이 FTA 활용과 현지 HS 분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일본 해상 수출 활성화도 도모한다. 올해 10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일본 해상 간이통관 제도'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향후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반품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주문 취소 등으로 반품되는 물품의 국내 재반입 지침을 개선해 재수입 면세 대상을 확대(총액 150달러→란별 150달러)하고, 사전등록 시 '반품거래등록번호'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간담회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수출 e-로움' 10대 과제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오른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조선·원전·항공 등 11건 파트너십 협약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 열렸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조선·원자력·항공·LNG·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한국산업은행과 서버러스 캐피탈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업 공동투자펀드 조성 MOU를 체결했다. 해양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기술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의 해양 역량을 재건,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업 및 미 군합의 MRO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엑스에너지·아마존웹서비스(AWS)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시장확대 협력에 관한 4자 간 MOU를 맺었다. 여기에 두산에너빌리티·한수원·삼성물산의 美 'AI 캠퍼스 프로젝트' 참여, ▲한수원·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설비 공동 투자 MOU도 있다.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103대(362억달러)를 신규 도입하고 GE에어로스페이스와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137억달러)을 맺었다. 이는 올해 3월 대한항공이 발표한 보잉 항공기 50대와 GE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구매 건과 별도의 추가 계약이다.

LNG 분야에서 가스공사는 미국산 LNG 연 330만톤을 10년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LNG를 중장기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내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한·미가 전략 산업 전반에서 투자와 기술, 공급망을 포괄적으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조선·원자력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한 미국 내 산업역량 재건이 본격화되고, 항공·LNG 분야에서는 안정적 수급과 장기적 사업 운영 기반이 마련됐으며,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의 첫 사례가 창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 김성은 기자 |

"앞날이 첩첩산중" 험난한 미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예고되는 등 대미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관세 폭탄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통관 과정과 비용 구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은 8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 관세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 수출물품에 해당하는 총관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관세가 중복될 경우 배제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자동차·자동차부품 품목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는 이중 부과되지 않는다. 특정 제품이 2개 이상 관세 조치에 해당할 경우 ① 자동차·부품 관세 ② 철강·알루미늄 관세 ③ 멕시코(25%)·캐나다(35%) IEEPA 관세 순으로 한 가지만 적용된다.

● 품목관세 시행일 및 세율 ●

시행일	3.12.	4.3.	5.3.	6.4.	8.1.	현재
철강·알루미늄	25%	→	→	50%	→	→
구리					50%	→
자동차		25%	→	→	→	→
자동차부품			25%	→	→	→

원산지를 판정할 때 FTA에 따른 방식이 아닌,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다. CBP가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건별로 판단하는데, 구체적 법령 규정은 없고 판례 또는 정성적 판단에 근거한다.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도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상 한국산으로 판정받지 못할 경우 결정세율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품목관세 대상에 파생제품이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만큼 원자재 함유량과 제조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파생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의 경우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어 실무적으로 함량가치를 산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있다.

무역협회 강금윤 수석연구원은 "비과세 기준액이 없어 철강·알루미늄이 약간이라도 포함돼 있으면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제련·주조국가를 미상으로 신고하면 200%의 관세가 부과돼 제조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미국은 관세 회피 목적의 우회수출이 적발될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가 아닌 40%의 징벌적 관세와 기타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외국산 물품 반입 후 단순 재포장 가공만 거치거나 실질적 변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환적국을 원산지국으로 표시할 경우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CBP에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낫다. CROSS(rulings.cbp.gov/home)에서 결정문 번호나 물품 명칭 등을 검색하면 유사 사례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반덤핑·상계조치를 적용받는 자재의 해외 판매거래가 우회수출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도 좋다.

수출대상국에 맞춰 공급망을 별도로 설계, 운영하는 것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미국향 수출 공급망은 비용 효율성보다는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둬 설계하되, 타지역향 공급망은 저렴한 임금과 원가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생산지 구축 전략을 유지하는 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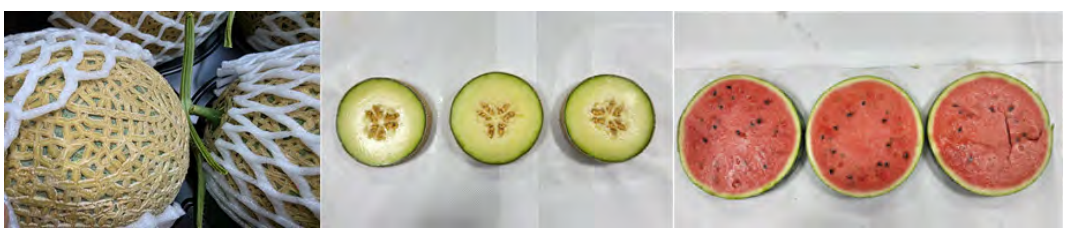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총 3,500억달러 상당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내 제조업 투자 조치의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현지 투자를 위한 기계나 설비, 소재 등을 수입할 경우 해당 품목에도 관세가 부과되면 투자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강 수석연구원은 "높은 인건비, 숙련된 노동자 부족, 현지 소재 및 부품 조달망의 취약성, 규제·인허가 지연 등은 현지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국내 생산·수출 대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성은 기자 |

CA 선박 기술 적용한 국산 멜론·수박 첫 두바이 수출 ··· 30여 일 항해에도 '신선도 우수'

신선도 유지 기간이 짧은 과채소류의 장기 유통 가능성이 실증됐다. 물류비용도 함께 절감할 수 있어 국내 농산품의 수출 지역 다변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온도와 공기 조성을 조절하는 시에이(CA) 선박 기술을 적용해 한 달간의 수송 기간에도 우리나라 멜론과 수박을 신선한 상태로 두바이에 시범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출공정 개선 후 멜론과 수박 내외부 품질(출처 : 농촌진흥청)

두바이 수출 규모는 머스크멜론 2.3톤, 일반 수박 1.7톤, 씨 없는 수박 1.2톤으로 총 5.2톤 분량이다. 이번 수출은 지금까지 수출이 제한적이던 멜론과 수박을 선박으로 30일 이상 걸리는 두바이까지 성공적으로 보냄으로써 수출국 확대는 물론 물류비 절감을 실현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농진청은 2025년 7월 기준 한국-두바이 간 물류비용은 항공 대비 40피트 컨테이너 12톤 선적 기준 약 14%, 6톤 선적 기준 약 27% 수준으로 수송편을 항공에서 선박으로 대체할 경우 약 27%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하구현 기자 |

해외 바이어 등 외국 국적 기업인 국내 입국 시간 단축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히 국내로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연말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김포·김해국제공항 등으

로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추천 가능한 경제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다.

8월 31일부터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김포와 김해국제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우리나라 국제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9월 23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열린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9월 23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품목분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식 20문항을 제한 시간 40분 안에 풀고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 및 단체 분야별로 성적 우수자에게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을 제공하며, 수상자는 10월 2일 발표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9월 23일 12시 30분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외국선박 대상 '선박평형수' 관리상태 9월부터 집중 점검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전면 시행 1주년을 맞아 9월부터 3개월간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선박평형수 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아시아 태평양 및 유럽 49개 국가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국내 입항한 외국선박으로 ▲선박평형수 검사증서의 유효성, ▲평형수 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출항 정지 등 강력한 조치도 예고돼 선사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선박이 해외에서 외국 정부의 점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8월 29일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사항을 배포했다. 전재수 해수부장관은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한·캐나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제6815.10호)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캐나다 FTA
질문	HS 제6815.10호의 물품 생산 시 동일하게 HS 제681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한·캐나다 FTA 제3.3조 제2항이 적용 가능한가요? ■ HS 제6815.1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한·캐나다 FTA 제3.3조 제2항 2. 부속서 3-가에도 불구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부터 제21류까지,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 또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상품을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의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동일한 호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상품이 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과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 되지 않는 호로 분류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답변	제6815.10호의 물품 생산에 동일한 소호의 원재료가 사용돼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사용된 동일한 소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한·캐나다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산지 결정기준

(1) 개요

FTA를 적용하려면 해당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해야 한다. 실무에서 활용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 Criterion),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과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특정공정기준(SP, Specific Process Criterion, 가공공정기준이라고도 한다)으로 나뉜다.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기준(General Rules)이 존재한다.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으로 협정 체계상 '원산지 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품목에 한정해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HS Code별 원산지기준이 리스트(List)로 제시돼 있어 이를 'List Rules'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캐나다 FTA상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한·캐나다 FTA 제3장(원산지 규정) 제3.1조(원산지 상품)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서는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는 요건을 3가지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는데, ① 제3.2조에 정의된 대로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완전생산품), ② 제3.3조에 정의된 대로 그 상품이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경우(불완전생산품), 그리고 ③ 그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원산지 재료 생산품)다. 물론 ①, ③의 방식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인 ②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으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세번변경기준이란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HS Code)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제조·가공이 이뤄진 것으로 봐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의 분류 체계를 활용한 가공공정기준의 일종으로 제조·가공이 이뤄지면 HS Code가 변경되는 체계를 통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 판정 시에는 완제품 및 원재료의 적절한 HS Code 분류가 판정사항의 핵심이다.

실제 우리나라 조세심판사례는 완제품에 대한 HS Code가 우리나라 과세관청(처분청)과 달라 관세를 추징당한 수많은 사례가 있다. 완제품의 HS Code는 수입물품의 기본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도 결정짓는다. 또한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확인하는데도 완제품의 HS Code가 활용된다.

원재료의 HS Code는 실제 수출입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FTA 원산지 판정 실무상 세번변경기준 적용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그만큼 원재료의 HS Code 분류도 더욱 중요해졌다.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

된다. 이 세번변경기준은 협정에 따라 어느 하나만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도 있고,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적용하라는 협정도 있고(선택기준, 한·ASEAN 또는 한·베트남 FTA 등), 두 가지 모두 만족을 시키도록 요구하는 협정도 있다(조합기준, 한·인도 CEPA 등).

협정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
한·ASEAN FTA	제3926.9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인도 CEPA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한·EU FTA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HS Code 제3926.9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된다. 동일한 물품을 수출한다고 해도 FTA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은 상이하다.

한·ASEAN FTA의 경우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② 부가가치기준(RVC 40%)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다(선택기준). 그에 반해 한·인도 CEPA의 경우 ①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과 ② 부가가치기준(RVC 35%)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며(조합기준), 한·EU FT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기준(MC 50%)을 통해서만 원산지 판정이 가능(단일기준)하다.

동일한 물품도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 각 협정에 맞는 원산지 판정 절차가 필요하고, 이는 곧 원산지 판정을 진행해야 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원산지 관리의 어려움을 뜻한다. 이에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FTA 협정을 체결하고자 노력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수출 대상 물품에 대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를 계산해 그 부가가치의 창출이 각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국가를 원산지(역내산) 국가로 인정해 주는 기준이다. FTA 원산지 판정의 대상이 되는 수출(공급)물품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원재료의 가격을 통해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한다.

부가가치기준은 협정에 따라 다른 산출방식을 활용하는데,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역내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것을 규정하는 RVC법(Regional Value Contents Method)과 역외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이 규정되는 MC법(iMport Contents Method)이 있으며, 이번 호의 대상 협정인

한·캐나다 FTA는 MC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RVC법 중 집적법 활용이 가능하다.

RVC법과 MC법은 결국 계산식이 다른 것인데, 선택할 수는 없고 협정에 따라 정해져 있다. 또한 RVC법은 집적법(BU, Build Up Method), 공제법(BD, Build Down Method),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으로 나뉜다. 계산식상 RVC는 높으면 높을수록 원산지 판정에 유리하고, MC는 낮으면 낮을수록 원산지 판정에 유리하다.

원산지 판정 대상 상품의 가격을 산정할 때 RVC에서 사용하는 집적법 또는 공제법을 적용하는 경우 대부분 FOB(본선인도조건)가격(조정가격 등으로 표현하는 협정도 있다)을 기반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고, MC의 경우 EXW(공장인도조건)을 기반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한다.

다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협정 중 한·UAE CEPA는 부가가치기준인 인정가치포함비율(QVC, Qualifying Value Content)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법을 적용하는데, 본선인도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공장도가격이 사용된 경우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은 본선인도가격에 기초해 계산된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보다 5퍼센트포인트(%P) 더 낮게 설정하고 있다. 만약 원산지 결정기준이 인정가치포함비율 40퍼센트 이상일 것(QVC 40%)이라면 FOB 가격을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는 경우 40%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EXW 가격을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는 경우 35%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때는 FOB, EXW 가격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제3.7조(허용치, 최소허용기준을 뜻한다.), 제3.15조(상품의 세트), 제3.16조(영역 원칙)는 공장도가격만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아직 발효되지 않은 협정인 한·GCC FTA의 경우 RVC인 집적법 또는 공제법을 통한 부가가치기준 적용이 가능한데, 원산지 판정 대상 상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공장도가치(ExWorks Value)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발효되는 협정에서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은 무조건 RVC(QVC)라고 해서 본선인도가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관세사 및 무역업체의 FTA 원산지관리 전담자들은 세번변경기준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원산지 판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기준 충족의 복잡성에 기인한다.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한 정보는 ① 완제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 관련 정보, ② 완제품의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 ③ 완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에 관한 정보로 크게 3가지다.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①부터 ③까지의 모든 정보가 원산지 판정 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원산지 판정 시 부가가치기준은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완제품 및 원재료 가격은 수출 또는 국내공급마다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원산지 판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목표 판매가로 수출을 진행한 A수출 건에 대해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했는데,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할인가격을 토대로 수출을 진행한 B수출 건은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모두 동일한 수출가격으로 수출을 진행했는데, 원재료 비용이 상승하며 부가가치기준 충족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HS Code를 잘못 분류해 원산지 판정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확한 HS Code로 분류하고, 원재료내역 및 생산공정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는 복수의 수출 건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있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질문은 제6815.10호의 물품을 생산할 때 동일하게 제681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비원산지 재료)로 사용한 경우 한·캐나다 FTA 제3.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일단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캐나다 FTA상 제6815.10호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캐나다 FTA 제3.3조 제2항의 활용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2) 완제품과 비원산지 재료의 HS Code

HS Code는 일반적으로 재질, 기능, 용도에 따라 분류되며, 기계류의 경우 완제품과 함께 부분품 또한 해당 4단위 HS Code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세번변경기준 판단 시에는 완제품과 비원산지 재료의 HS Code가 달라야 하는데, 세번변경기준 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의 경우 완제품과 비원산지 원재료의 4단위 HS Code가 달라야 한다.

예를 들어 기계류의 경우 다양한 HS Code에서 완제품의 HS Code 4단위와 부분품의 HS Code 4단위가 동일하다(예 : 제8422호). 다양한 협정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일반적인 세번변경기준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협정에서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세번변경이

요구되는 원재료를 비원산지 재료로 요구하면서 제8422.40호에 분류되는 자동포장기계에 대한 원산지 판정 시에는 제8422.90호에 분류되는 자동포장기계의 부분품은 원산지 재료를 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16부에 규정된 물품 중 완제품과 부분품의 4단위 HS Code가 다른 경우(예 : 제8501호, 제8503호)와 완제품과 부분품의 4단위 HS Code가 같은 경우(예 : 제8422호)에는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협정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
한·ASEAN FTA	제8501.40호 제8422.4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ASEAN FTA에서 제8501.40호 및 제8422.40호의 PSR은 모두 같은데 이때 CTH를 활용한다면 제8501.40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03호에 해당되는 원재료는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8422.40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22.90호에 해당되는 원재료는 원산지 재료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문제는 PSR의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협상하는 것이 중요한데,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을 의도한다면 한·캐나다 FTA와 같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구성하면 된다.

협정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
한·캐나다 FTA	제8501.4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제8422.4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2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2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한·캐나다 FTA는 제8422.40호에서는 CTH를 규정하지만 제8501.40호에서는 CTH이지만 제8503호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캐나다 FTA에서는 다른 방식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요건을 완화시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제8481.80호의 경우 "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②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8481.90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같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②에 해당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4단위 세번변경)되고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제8481.80호의 제품 생산에 제8481.8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는 4단위 세번변경이 되지 않아 한·캐나다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즉, 4단위 세번변경기준 외에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1.90호에 대해서는 MC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동일한 호에 완제품과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Code에 대해 6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을 의도한다면, 한·이스라엘 FTA의 제16부 원산지 결정기준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협정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
한·이스라엘 FTA	제8501.4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8422.4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한·이스라엘 FTA의 경우 제8501.40호 및 제8422.40호 모두 CTH를 규정하며 원산지 결정기준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16부 주석에 따르면 호에 상품 관련 소호와 '부품 및/또는 부속품' 관련 소호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 '부품 및/또는 부속품' 관련 소호는 제외하고, 아래에 정의된 규칙 대신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즉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8501.40호에는 CTH가, 제8422.40호에는 CTSH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같은 형식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형성될 수 있다.

(3) 한·캐나다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한·캐나다 FTA는 제3.3조(충분한 생산)에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부속서 3-가의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건이 전적으로 충족되고 제3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상품은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3-1은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을 의미한다.

한·캐나다 FTA 원산지 규정의 해석 목적상 세번변경의 요건 또는 기타 특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적용한다면, 세번변경의 대상은 비원산지 재료만 해당될 것이다.

질문 대상인 제6815.10호에는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분류되는데, 이는 HS 2022 버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캐나다의 경우 HS 2012 버전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 연계표 활용이 필요하다. 제6815.10호에 연계된 HS 2022기준 HS Code는 제6815.11호, 제6815.12호, 제6815.13호, 제6815.19호, 제9620.00호가 있다. HS 2022 기준 물품은 제6815.10호의 물품이 6단위로 보다 더 세분화된 것인데, 탄소섬유(제6815.11호), 탄소섬유 직물(제6815.12호),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제6815.13호) 등으로 세분화됐다.

다시 돌아와 제6815.1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면 한·캐나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CTH)"이다. 즉, 4단위 세번변경기준상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투입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제6815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해당 사례에서는 제6815호로 분류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PSR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추가적인 원산지 충족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제3.8조(최소허용수준)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허용기준을 활용하면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거나 "그 밖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것이고, 해당 사례에는 관련 내용이 나와있지 않지만, 최소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의 한·캐나다 FTA 제3.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캐나다 FTA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제한된 조건에서 특정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부가가치기준 활용이 가능한 규정이다.

일단 해당 규정의 적용 조건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부터 제21류까지,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 또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상품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존재한다. 이는 원산지 판정 대상 제품의 HS Cod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질문 & 답변상 HS Code는 제6815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그 상품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의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동일한 호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상품이 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상품과 비원산지 재료가 ① 동일한 소호(6단위 HS Code)에 해당되거나, ② 더 이상의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완제품과 부분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HS Code의 예시를 들 수 있다.

상품과 비원산지 재료가 ① 동일한 소호(6단위 HS Code)에 해당되는 것은 제9506.91호(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와 같은 물품이 존재할 수 있다.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506호는 별도의 부분품 세번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9506.91호의 부분품은 완제품과 동일하게 제9506.91호에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상품과 비원산지 재료가 ② 더 이상의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것은 완구(제9503호)로 예시를 들 수 있다. 해당 HS Code는 제9503.00호만 존재하며 세분화된 6단위 HS Code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마찬가지로 제95류 주 제3호를 적용해 부분품과 부속품이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돌아와 제6815.10호의 경우 탄소섬유, 비(非)전기용의 탄소섬유 제품, 비(非)전기용의 그 밖의 흑연 제품이나 탄소 제품이 분류되며, 해당 물품의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6815.10호 비원산지 재료가 존재한다면, 상품과 비원산지 재료가 ① 동일한 소호(6단위 HS Code)인 상황에 해당될 것이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을 모두 충족한 물품은 세 번째 요건인 MC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상품과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호로 분류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것으로 봐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호에 분류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제3.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3.3조 제2항에 따라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에 따라 생산된 상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에 포함되는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우 최종 상품의 원산지 결정 목적상, 최종 상품 생산에 사용되고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만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 시 고려될 것이다.

관세청에서는 제6815.10호의 물품 생산에 상품과 동일한 소호의 원재료가 사용돼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사용된 동일한 소호의 비원산지 재료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한·캐나다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CTH를 완화한 조건이라고 생각되며, 제84류 등에 있는 부분품 세번을 고려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외의 물품에 대해 CTH를 적용하는 경우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다만 실제 한·캐나다 FTA 제3.3조 제2항의 적용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어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원재료 내역을 통한 HS Code 확인 및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사례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환급 / 간이정액환급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되면 별도 신청 없이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제6항에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며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억원 이하일 것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8억원 이하일 것

품목분류 / 남성 의류의 HS Code

남성용 우븐셔츠의 HS Code가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직물제의 넥라인이 일부 또는 완전히 오픈되며 조이는 부분이 없는 남성용 의류라면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의 '인조섬유로 만든 것'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에 해당된다면 제6205.30-1000호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4호에서 "제6205호와 제62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밑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하며, 제62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길거나 짧으며, 넥라인(neckline)을 기점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트임(opening)이 있다. '블라우스'는 헐렁한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없는 것도 있으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트임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 '셔츠'·'셔츠블라우스'·'블라우스'는 깃(collar)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남성용과 여성용 의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 및 제62류 주 제9호**
>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특수통관 / 관세 납부 증명서

해외 직구로 관세를 납부한 뒤 관련 증명서(영수증)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수입신고 건에 대한 세부고지내역(영수증 겸)이 필요한 경우 납부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고지서는 통관지 세관, 통관대행 관세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수입자가 직접 확인하고자 할 때는 다음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납세고지(통보)서 또는 전자납부 > 납부내역

로그인, 출력 등 유니패스 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은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 고객센터 > 커뮤니티 > 질의응답 메뉴' 또는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유니패스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무소에 문의해 안내받기 바랍니다.

실제지급금액에 대한 관세평가 판례해설

김 희 정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Ⅰ. 들어가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관세법」 제30조 제1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는 「관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와 같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 아래 물건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등 수입거래를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한 후 원고의 영업본사가 수입거래의 실질적 거래당사자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영업본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대금청구서상의 미지급금액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원칙 위반 등 관세조사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는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Ⅱ. 처분의 경위

1. 원고의 지위

가. 원고는 스웨덴에 있는 A법인이 자본금 100%를 투자해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수입·유통 소매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년경 국내에 설립한 법인으로 2017.2. 기준으로 국내에 36개 직영 매장을 운영했다.

나. 한편, 원고의 1인 주주인 A법인의 지분은 스웨덴 E그룹 관계회사들의 모회사로서 E브랜드 소유주인 B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다. 모회사인 B법인의 자회사로 C법인, D법인 등이 있다.

2. 유통계약 등의 체결

가. 원고는 E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을 수입하기 위해 2009년경 스웨덴에 위치한 특수관계사로서 그룹의 영업 본사인 C법인과 사이에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상표권사용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 및 지원용역계약(AdministrativeServices Agreement)을 각 체결했고, 그에 따라 E브랜드 물품을 수입해 이를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취득했다.

나. 원고는 이와 같은 각 계약 체결 이후 2013.6.3.부터 2015.7.30.까지 E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C법인에 구매주문 및 대금지급을 하고,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에 소재한 C법인의 위탁생산업체(이하 통틀어 '제3국 위탁 생산자'라 한다)로부터 위 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 위탁생산자의 상업송장(Invoice)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는 E브랜드 물품 수입과 관련해 C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 및 디자인 비용을 제3국 위탁생산자의 상업송장 기재 생산대금에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위 물품 수입에 관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했다.

3. 관세심사 결과

가. 피고는 2015.8.10.부터 2015.8.28.까지 원고의 E브랜드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및 외환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의 심사를 위해 심사대상기간을 2013.6.1.부터 2015.7.31.까지로 하는 관세심사를 실시했다가, 정식으로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채 2017.3.경까지 간헐적으로 8회에 걸쳐 원고에게 누락된 자료의 추가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다음, 2017.5.19. 기업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관세심사를 사실상 종료했다.

나. 이와 같은 심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C법인과 유통계약 등을 체결하고 E브랜드 물품을 제3국 위탁생산자로부터 수입하면서 제3국 위탁생산자 명의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만을 물품대금으로 신고했으나, C법인이 '인보이스(Invoice)'와 같은 형식의 대금청구서(Planning Marketing Invoice, 이하 'PMI'라 한다)를 매월 발행해 원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이른바 PMI 기재 미지급금액(대금청구서 중 'Remains to pay'에 해당하는 잔액으로 쌍방이 통칭하는 대로 이하 'PMI 미지급금액'이라 한다)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돼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4. 관세 등 증액 경정·고지

가. 피고는 E브랜드 수입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제3국 위탁생산자가 아닌 C법인이고, 그 거래가격은 송장에 기재된 생산대금 및 상표권·디자인 비용에다가 C법인이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발행하는 PMI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PMI 미지급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됨에도 원고가 이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당시 누락한 것으로 봐, 피고는 2017.5.19. 원고에게 2013.6.3.부터 2015.7.30.까지 기간에 거래한 수입신고 총 3,057건의 E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물품('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PMI 미지급금액 합계 40,793,506,796원 상당액을 해당 수입 건의 매월 수입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 관세 등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결과 통지를 했다.

나. 원고는 2017.6.19.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관세청장은 2017.11.3. 원고의 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다. 피고는 2017.11.7.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3,057건의 수입신고분에 대해 관세 2,919,109,510원, 부가가치세 4,372,465,700원 및 가산세 2,696,542,430원(=관세 가산세 824,030,790원+부가가치세 가산세 1,872,511,640원) 등 합계 9,988,117,640원(=관세 2,919,109,510원+부가가치세 4,372,465,700원+가산세 2,696,542,43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했다.

5. 전심절차

원고는 위 경정처분에 불복해 2018.1.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8.11.20. 기각됐다.

6. 관세 등 감액 경정·고지

가. 피고는 2020.4.20.경 원고에 대한 당초 2017.11.7.자 관세 등 합계 9,988,117,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1] '계산표' 기재 '⑥ 직권취소 금액'란의 각 해당 금액 합계 145,193,84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감액 경정을 고지함과 아울러 151,838,170원(=관세 56,077,180원+부가가치세 89,116,660원+가산금 6,644,330원)의 환급통지를 했다.

나. 피고의 2020.4.20.경 직권취소 상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액이 만원 미만인 1,651건 합산 4,657,480원, 세액경정통지서 미교부 30건 합산 140,312,150원, 과다고지 일부취소 1건 31,880원, 추가로 확인된 정당세액 만원 미만인 34건 합산 192,330원([별지3] '직권취소

내역' 참조) 등으로 직권취소 세액은 총합계 145,193,840원(=4,657,480원+140,312,150원+31,880원+192,330원)이 된다.

다. 이와 같은 직권취소로 당초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11.7.자 관세 등 합계 9,988,117,640원의 부과처분은 9,842,923,800원(=9,988,117,640원-145,193,840원, 가산세 포함)이 남게 됐다(잔존하는 당초 2017.11.7.자 관세 등 9,842,923,800원에 관한 각 수입신고별 해당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Ⅲ. 원심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①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원칙 위반, 경정통지서 교부 흠결 등 절차적 위법사유, ② PMI 미지급금액은 사업지원서비스료에 해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실체적 위법사유 등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2. 절차적 및 실체적 각 위법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원칙 위반 여부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구 「관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인 2015.7.29. 원고에게 심사사유를 '2015년 3분기 정기 법인심사', 실지 심사기간을 '2015.8.10.부터 2015.8.28.까지', 심사범위를 '수입신고 가격, 품목분류, 외국환거래 등 통합심사', 심사대상 기간을 '2013.6.1.부터 2015.7.31.까지',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로 '과세가격 관련 자료(실제지급금액에 관한 구매계약서, 연도별 수입물품 가격리스트, 거래가격 결정에 관한 설명서, 로열티계약서, 수수료 지급내역 등), 특수관계거래 관련 자료(가격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이전가격보고서, 원가분담약정서, 원고 등 분담액 조정명세서 등)'를 명시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

나) 이와 같이 당초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 기간은 2015.8.10.부터 2015.8.28.까지였으나, 원고는 위 조사 종료일에 가까운 2015.8.21.에 총계정원장(2013~2015년) 및 제3국 생산자 표준계약서를, 2015.8.24.에 상표권사용계약서를, 2015.8.25.에 서비스제공계약서를, 그리고 관세조사 종료예정일 전날인 2015.8.2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PMI 연도별 내역 자료'를 제출했다.

다) 원고는 관세조사 종료예정일이 지난 2015.9.7.경 스스로 피고에게 C법인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E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서 제3국 위탁생산자를 물색하는 관리업체에 관한 설명자료, 상표권 사용료 등 송금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했고, 2015.9.17.경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라) 피고는 PMI 과세가격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조사를 종료하지 못한 채, 원고에게 간헐적으로 총 8회에 걸쳐 자료요청 등을 했다. 즉, 2015.11.30. 수입물품에 적용한 변경 전 이전가격 자료와 인보이스 등 자료 요청, 2016.1.11. 및 2016.3.25. 각 PMI 설명자료 요청·재요청, 2016.10.12. 및 2016.12.9. 각 거래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보완) 자료 요청, 2017.1.6. PMI 관련 사실관계 확인, 2017.1.19. 변경 후 이전가격 자료 요청, 2017.3.27. PMI 관련 자료 요청 등을 차례로 했다.

마) 피고는 실지 조사기간 종료 이후 누락된 자료 유무를 확인·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 중 수입물품에 적용한 이전가격 결정자료 및 발행된 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2015.11.30. 원고에게 위 누락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게 됐고, 이에 원고가 관련 자료 일부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바) 피고는 그동안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분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15.8.27.에 제출한 PMI 연도별 내역 자료와 관련해 원고에게 "PMI에 기재된 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PMI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수입물품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의견을 물어봤으나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게 되자, 2016.1.11. 부득이하게 PMI에 관한 연도별 상품 판매 상세 데이터 및 PMI 계산근거 상세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PMI에 관한 설명 및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서 조사기간이 경과한 사정을 고려해 "원고가 자료 제출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그 제출예정일을 기재하면 된다는 점과 아울러 해당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자료가 없다면 그에 관한 사유서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도 고지했다.

사) 이에 원고는 2016.3.10.경 피고에게 PMI 관련 자료 일부(연도별 상품 판매 및 임차료 데이터,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PMI 계산에 관한 사업지원비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피고가 요청한 부분과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2016.3.25. 원고에게 PMI 관련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원고는 2016.4.15.경 일부 자료(PMI 계산방법 설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심사하던 중, PMI에 기재된 가격을 수입물품 거래가격에서 제외한 채로 원고가 수입신고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은 통상적인 이윤 등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피고는 2016.10.12. 원고에게 구 「관세법」 제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

자) 이에 원고는 2016.11.11. 피고에게 "C법인과의 거래는 용역거래로서 이에 대해 결정된 이전가격 및 청구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는 한편,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신고한 거래가격이 구 「관세법」제30조 제2항, 제3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2016.12.9. 원고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한 원고 측 주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됐고, 원고는 2016.12.29.경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한편, PMI 금액의 안분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차)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최종 심사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PMI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및 원고의 2016.12.29.자 답변의 확인을 위해 2017.1.6. 원고에게 사실관계 확인 요청서를 송부했고, 원고는 2017.1.11. 피고에게 관련 답변서를 제출했다.

카) 피고는 2017.1.19. PMI 미지급금액이 용역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봐 원고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용역계약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요청했고, 원고가 기업심사기간 중 이전가격을 변경해 신청한 사실을 확인해 이전가격 변경신청에 관한 자료들을 함께 요청했다(그 당시 피고는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 없음이라고 표기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했다). 이에 원고는 2017.1.20.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타) 피고는 2017.3.23.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PMI 계산근거 자료, PMI 금액에 상응하는 수입신고번호 등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2017.4.6. 피고에게 추가 자료 제출 없이 "PMI 금액과 수입신고번호를 매칭시키는 것이 실무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동이 투입되므로, 해당 월에 수입된 수입신고번호에 해당 PMI 미지급금액을 안분해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파) 이에 피고는 추가자료 제출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원고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고, 그동안의 제출 자료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원고와 C법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경우에 해당해 구 「관세법」 제30조 제1, 2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원고가 신고누락한 PMI 미지급금액도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도출했고, 2017.5.19.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결론을 반영한 과세전 경정통지내역 등을 담은 기업심사결과통지서를 송부했다.

2) 관세조사의 위법 여부

가)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가 구「관세법 시행령」제1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원고에게 당초 고지한 조사 종료예정일인 2015.8.28.이 지난 후에도 관세조사를 사실상 계속 수행한 것은 절차상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관세조사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경위, 방법 및 내용,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절차위반의 내용과 정도 및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권리나 법익의 성질 및 침해 정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해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납세의무자의 자료 제출 지연 또는 거부 등으로 조사를 정식으로 종료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절차를 정식으로 밟지 않은 채 사실상 조사를 계속 수행했다고 해 해당 관세조사가 무조건 절차상 위법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조사연장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로서 조사연장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사실상 승낙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사행위가 누락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추가 확인을 위한 것에 불과해 조사범위를 추가 확대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조사연장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사실상 연장된 관세조사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③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관세조사가 사실상 연장된 것은 원고가 자료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2015.8.28.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했던 자료는 대부분 원고가 누락한 자료이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원고에게 그 주장 내지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조사권을 남용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특히, 이 사건에서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는 누락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거나 원고가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구「관세법」제37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납세자의무자가 신고한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사무실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질문조사권 등을 행사한 것도 아니어서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원고의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의 영업수행에 중대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조사 종료예정일 이후 진행된 피고의 관세조사를 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⑤ 피고가 정식으로 당초 조사를 종료하지 못하고 사실상 조사기간을 연장한 채 간헐적이나마 총 8회에 걸쳐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일 뿐, 관세조사를 정식으로 종료하고 그에 관한 결과통지서를 송부한 후 재조사에 들어간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의 관세조사가 구「관세법」제1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가 정한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기업심사 관련 문답서가 세관 사무실에서 세관공무원이 원고 측 회계팀 팀장과 물류팀 과장을 상대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 기재내용("거래 관련 추가자료 제출 답변의 설명 내용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직접 방문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등에 비춰, 이와 같은 조사는 원고 측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자발적 요청으로 임의출석해 이뤄진 것일 뿐이고 달리 피고 측에서 소환통지를 해 이뤄진 강제조사라고 볼 사정은 없는바, 이를 두고 재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관세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⑥ 당초 조사 종료예정일 이후 진행된 피고의 관세조사는 원고 측의 임의의 협력 내지 묵시적 동의를 전제로 진행된 것일 뿐이며, 피고의 사실상 강요나 회유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다거나 적법절차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은 없다. 이 사건 처분 이후 조세심판청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피고의 사실상 조사연장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는 사정도 없다.

나)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가 관세조사권을 남용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정통지서 교부 흠결 등 절차상 하자 존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액경정통지서를 문서가 아닌 이동형 저장장치(Universal Serial Bus, 이하 'USB'라 한다)에 담긴 문서 파일을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해 주는 방법으로 전달했고, 그중 30건의 수입신고에 관련된 세액경정통지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수의 수입신고 건은 세액경정통지서 기재 금액과 다른 금액을 통합납부명세서에 반영해 고지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정통지서 교부 방식의 위법 여부

(1)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가산세액, 경정사유 등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이와 같이 세액경정통지서의 교부방법은 납세의무자가 구 「관세법」 제3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 규정에 따른 전자송달을 신청해 전자우편주소로 송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서면인 세액경정통지서의 교부가 과세처분이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인 절차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자파일 형태로 경정통지서가 저장된 USB와 같은 저장매체 자체를 교부하거나 거기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송부함으로써 경정통지서의 서면 교부 방법을 갈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전자송달 신청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은 2017.11.8.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해 총 3,209건(=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수입신고 3,057건+징수금액 최저한도 1만원에 미달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152건)의 수입신고 관련 각 세액경정통지서를 문서 교부의 방법이 아니라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USB를 이용해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했다.

(나) 그 당시 원고 소속 회계팀 팀장은 이와 같은 세액경정통지서 교부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사실상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의미로 수령 확인서에 서명·날인해 세관공무원에게 이를 교부했고, 달리 위 서명·날인이 강요나 회유에 의해 이뤄졌다거나 원고 측에서 종이로 된 문서로 출력·교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2017.11.7. 세관공무원이 원고의 물류팀 과장에게 보낸 이메일 및 그 다음 날 원고의 물류팀 과장이 원고의 회계팀 팀장에게 보낸 이메일의 각 내용에 비춰, 원고와 피고는 USB에 경정통지서의 전자파일을 담아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한 방식에 대해 사전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와 같은 경정통지서 교부 방식이 원고 측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방식이라고 볼 사정은 없다.

(라)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처분청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해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교부된 경정통지서 문서 파일 자체는 납부고지서, 통합납부명세서, 경정추징내역서 등과 대조해 볼 때 파일 생성·저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경정통지서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경정통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처분에 관련된 세액경정통지서는 총 3,057건의 수입신고에 관한 것으로 원칙적인 서면 교부 방식에 의할 경우 총 6,114장(=3,057건×1건당 대략 2장) 이상의 서면을 교부해야

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인 원고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자파일 형태로 받는 것이 그 검토나 보관·처리 등에 있어 더 효율적이고 간명하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하다. 그 당시 전자파일 형태의 경정통지서 교부 방식에 대해 원고 측의 승낙의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달리 이와 같은 방식이 원고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유발할 염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바) 그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교부했던 문서로는, '세액경정통지서 및 통합납부고지서 송부'에 관한 정식 공문, 납부고지서, 통합납부명세서가 있다. 납부고지서에는 총 3,057건의 수입신고별(개별납부번호별) 각 과세처분의 합산액이 기재돼 있고, 통합납부명세서에는 총 3,057건의 수입신고에 관한 각 과세처분의 세액이 세목별로 명확히 기재돼 있는 등 경정고지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후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를 여러 건 해야 할 경우 통합해 하나의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사)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2017.5.19. 송부받은 기업심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경정사유와 근거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아)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거래는 총 3,057건으로 각 수입신고별로 별개의 과세처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각 수입신고별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가산세액, 경정사유 등을 적은 세액경정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했어야 했지만, 세관공무원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세액경정통지서를 교부하는 방식에 대해 원고 측에서 적어도 묵시적이나마 동의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예외적인 절차적 방식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전자파일이나 USB 등 전자적 방법으로 세액경정통지서를 교부한 피고의 절차적 행위가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정통지서 교부 누락, 경정통지서와 납세고지서 간 불일치 등 절차상 하자의 존부

원고는 피고가 30건의 수입신고에 관련된 세액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다수의 수입신고 건은 세액경정통지서 기재 금액과 다른 금액을 통합납부명세서에 반영해 고지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지적사항과 관련해 피고가 2020.4.20.경 당초의 부과처분 중 ① 세액이 만원 미만인 1,651건 합산 4,657,480원, ② 세액경정통지서 미교부 30건 합산 140,312,150원, ③ 과다고지 일부취소 1건 31,880원, ④ 추가로 확인된 정당세액 만원 미만인 34건 합산 192,330원 등 총합계 145,193,840원

(=4,657,480원+140,312,150원+31,880원+192,330원)의 세액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미 피고에 의해 시정돼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직권취소 부분이 원고의 지적과 같이 위법하다고 평가돼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취소된 각 해당 처분에만 관련된 것으로 잔존하는 이 사건 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PMI 미지급금액이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PMI 미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춰,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C법인의 사업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즉 사업지원서비스료에 해당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① 원고는 대한민국 국세청 및 스웨덴 과세관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Bilateral Advanced Pricing Agreement, 이하 'APA'라 한다)을 신청함에 있어 원고와 C법인 사이에는 물품공급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상표사용과 디자인지원 및 사업지원서비스 용역거래만 있는 것으로 신고해 사전승인을 받았으므로 PMI 미지급금액은 원고와 C법인 사이의 물품거래대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고, 사업지원서비스료로 해석돼야 한다. ② 원고가 작성한 여러 내부 문건에 의하더라도 PMI 미지급금액은 C법인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각종 사업지원서비스의 대가로만 볼 수 있을 뿐, 물품에 대해 지급하는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③ PMI 미지급금액은 C법인이 원고에 대한 사업지원서비스료를 추산해 월별로 원고에게 잠정 청구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는 때'에 지급하는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고, 매월 발행한 PMI 미지급금액의 총 합산액 역시 연말 조정으로 상당 금액이 차감되므로, 실제 지급할 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2016년경 C법인과 사업지원서비스 용역계약(Complex Sale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했는데, 이는 유통계약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통보 등 기존 유지돼 온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피고의 위법한 장기간의 재조사에 지쳐 차후 관세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약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PMI 미지급금액은 원고가 C법인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물품 대가의 일부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3.6.3.부터 2015.7.30.까지 C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PMI 미지급금액 합계 40,793,506,796원이 이 사건 물품의 실제거래가격 중 일부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 총액을 해당 수입 건의 매월 수입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 관한 계약당사자 확정

(1)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수입거래에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아래 물건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등 수입거래를 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는 「관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 원고는 E그룹의 국가판매조직(Country Sales Organization, 이하 'CSO'라 한다)의 일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하기 위해 C법인과 사이에 2009년경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 상표권사용계약, 지원용역계약을 각 체결함에 따라 C법인에 대해 생산대금(제3국 위탁생산자 송장금액), 상표권이용대금(순매출액의 1.9%), 디자인비용(수입물품가격의 0.25~0.61%)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그에 따라 원고는 C법인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구매주문을 하고, 제3국 위탁생산자가 발행한 상업송장 기재 생산대금을 비롯해 상표권 및 디자인 비용을 C법인에 지급해 오고 있다.

(나) 위 유통계약서 내지 공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C법인은 수입물품이 원고에게 인도될 때까지 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그 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한다(제4.3조)", "원고는 C법인의 승인하에 판매하지 못한 상품을 C법인에 반품할 수 있다(제4.4조)", "C법인은 인도된 상품의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4.5조)", "C법인은 인도된 상품에 대한 주문서 및 월별 청구서를 발행한다(제5.4조)", "C법인은 원고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제조물 책임 클레임에 대하여 원고의 관련 배상을 한다(제7.2조)"는 취지의 약정을 맺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춰, 원고의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 관여한 계약상대방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아래 수입거래를 수행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C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가 설명하고 있는 패스트 패션업체의 특성에 의하더라도, C법인은 의류기획, 디자인, 생산,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에 관한 최종적 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판매 당사자로서 제3국 위탁생산자와 의류품 생산위탁 계약을 맺고 원고 등 CSO와는 물품 공급계약을 별개로 체결하는 등 물품거래의 주체가 된다고 해석될 뿐이다. 반면, 원고는 C법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수 없고, 원고 스스로 제3국 위탁생산자에 대한 선택권도 없는바, 원고는 제3국 위탁생산자로부터 수입물품을 운송받을 뿐 그쪽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직접적인 가격협상, 구매주문 등 상호간에 직접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E그룹의 표준구매조건 역시 피고의 관세조사가 있은 뒤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아무런 서명날인이 없고, 제3국 위탁생산자가 준수할 사항들을 C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배포·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그것만으로 원고와 제3국 위탁생산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제3국 위탁생산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해 인도하면서 상업송장을 발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C법인 및 J의 결정과 지시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C법인이 제3국 위탁생산자에게 전 세계 CSO의 주문내역을 송부하고 제3국 위탁생산자가 C법인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책정한 생산대금으로 원고 등 CSO에 대한 상업송장을 발행해 물품을 수출하며, 이후 C법인이 원고 등 CSO로부터 받은 생산대금을 제3국 위탁생산자에게 송금하는 등 제3국 위탁생산자의 상업송장 발행 및 물품운송 등은 C법인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다. 결국 제3국 위탁생산자는 이 사건 물품의 생산 및 거래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갖지 못하고 C법인으로부터 제조·생산을 위탁받은 하청업체들로서 E그룹의 영업본사인 C법인의 사실상 지배를 받을 뿐이므로,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의 실질적 거래당사자로서 물품공급계약의 주체는 원고와 C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가 그 주장대로 제3국 위탁생산자를 거래당사자로 인식한 것이라면, 원고가 C법인에 생산대금을 지급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한국은행에 실제로 제3자 지급신고를 한 적은 없다).

(라) 원고는 C법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원고 및 제3국 위탁생산자의 외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C법인을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법인이 외환부담 감소의 목적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C법인이 원고와 체결한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 및 제3국 위탁생산자와 체결한 생산 위탁계약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C법인이 단순히 거래 중개 내지 대행자 지위에서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환위험과 결제위험은 통상 직접적인 거래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국제거래의 상관행에 부합하므로, C법인이 여전히 주도적인 판매자의 지위에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원고 또한 합리적인 상인이라면, 제3국 위탁생산자가 아니라 C법인을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의 진정한 상대방으로 해 상행위를 수행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추단하는 것이 자연스

럽고 통상의 거래관념과 상관행에도 부합한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가격협상과 구매주문, 생산대금 및 PMI 금액의 결제 등 이 사건 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C법인과 진행했다. 나아가 유통계약 등 각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원고와 C법인 간에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를 한다는 데에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 관여한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제3국 위탁생산자가 아니라 C법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도 더욱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 수입에 관한 거래당사자를 C법인으로 본다면, C법인이 원고에게 매월 발행하고 청구한 PMI 미지급금액이 이 사건 물품 수입의 거래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PMI 미지급금액의 내용과 성격 및 법적 평가

(1) PMI 미지급금액의 내용 분석

(가) 원고와 C법인이 체결한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에 의하면, "C법인은 해당시기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원고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한다. 적용되는 가격모델은 당사자 간 정상가격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합의되었다(제5.1조)", "C법인은 인도된 상품에 대한 주문서 및 미지급금액 월별 청구서(지불요청서)를 발행한다. 해당 청구서에는 지급대상 금액 및 지불에 대한 조건이 포함된다(제5.4조)"는 취지의 가격 및 지불 약정을 맺었음을 알 수 있다.

(나) C법인은 실제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6.3.부터 2015.7.30.까지의 각 거래와 관련해 원고에게 매월 PMI를 발행해 물품대금 청구를 해왔는데, 그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월별 매출액(Sales Value), Ⓑ 목표영업이익률 산정을 위한 차감 할인율(C법인 Discount factor), Ⓒ 원고가 C법인에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재판매 차감금액 내지 공급가격(Resale Price minus value), Ⓓ 이미 결제한 물품매입금액(Already Paid), Ⓔ 미지급금액(Remains to pay)으로 이뤄져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 PMI 미지급금액은 C법인이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에 따라 매월 청구하는 물품대금청구서에 기재된 구성 항목 중 Ⓒ 재판매 차감금액[=Ⓐ-(Ⓐ×Ⓑ)]에서 Ⓓ 결제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바, 이는 물품거래대금의 잔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PMI 본문 첫머리에 '해당 월에 구매한 상품(Commercial goods purchased in the month of~)'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 PMI 미지급금액이 이 사건 물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대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 원고는 상표권사용계약 및 지원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 C법인에 대해 순매출액의 1.9% 상당의 상표권이용대금, 수입물품가격의 0.25~0.61% 상당의 디자인비용 등 이 사건 물품 거래가격에 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더불어 원고가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 제5.1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PMI 미지급금액 역시 물품대금청구서의 구성 항목으로 명시된 사정 및 통상의 거래관념과 상관행에 비춰, 이 사건 물품 거래가격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달리 PMI 미지급금액을 용역거래에 관한 사업지원서비스료라고 평가할 만한 용역계약서 등 증거자료가 관세조사 기간에는 물론이고, 이후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현출된 바 없다.

(2) PMI 미지급금액의 법적 성격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6.3.부터 2015.7.30.까지 수입거래에 관해 매월 발생한 C법인에 대한 PMI 미지급금액을 제품·상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 이 사건 물품 자체의 수입대금으로 인식했고, 관세조사가 진행되던 2015.12.경부터 비로소 판매관리비 내지 커미션비용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만일 PMI 미지급금액이 처음부터 사업지원서비스료 내지 경영지원서비스료의 성격을 지닌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원고로서는 C법인과의 첫 거래 시부터 이를 판매관리비로 계상했어야 함이 당연한데도 이와 배치되는 회계처리를 장기간 해 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사업지원서비스료 계산서를 보더라도, 원고가 사업지원서비스료(Business Support Fee)라고 주장하는 PMI 미지급금액 상당액이 총 매출원가(Total Cost of goods sold)로 계상돼 있고 원고의 2013~2015년 각 기여분정산서에도 PMI 미지급금액 중 연말 차감금액을 매출원가로 표시하고 있는바, 원고와 C법인 사이의 유통계약서 내지 공급계약서 제5.4조항에 정확히 들어맞는 PMI 미지급금액은 재화거래에 관한 물품대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원활한 국내 매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원고 주장과 같이 C법인이 '원고가 제3자 제조업체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미수금 임시계정에 계상하고, 제3자 제조업체에게 전달할 물품대금을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대체 처리했다거나, 원고가 수입물품 관련 거래에서 수입물품을 재고자산으로 인식했지만, C법인은 이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2014.8.28. 국세청에 쌍방향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에는 원고가 수행할 C법인과의 대상거래를 상품유통거래, 상표권사용 허여거래, 디자인 비용 지급거래로 구분·기재했다가, 관세조사가 진행되던 2016.6.경 그 변경신청을 해 2016.10.28. 최종적으로 사업지원서비스 거래, 상표권 거래 및 디자인 지원 거래로 변경된 채 사전승인을 받게 됐다. 특히 2014년경 당초 제출한 신청서에는 상품유통거래에 대해 "원고는 C법인이 유통하는 상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단순 판매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단순 소매업자로서의 적정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는 취지로 상품유통 거래흐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바 있다.

(다) 원고는 제3국 위탁생산자 명의의 상업송장에 따른 생산대금을 C법인에 송금하면서 E

그룹 내부 관계사들 사이의 재고 이동에 따른 원고의 다른 채권, 채무를 상계한 잔액을 C법인에 송금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2013.11.28. 한국은행에 제출한 지급방법 변경신고서에는 원고의 C법인에 대한 채무가 'C법인 재고 매입채무'라고 기재돼 있어 원고 스스로 C법인과의 수입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액이 용역거래가 아니라 물품공급거래에 의한 대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의 목적과 취지 및 산출방법은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각 근거 법령의 적용범위와 요건 또한 다르므로, 원고가 APA 신청 과정에서 C법인과의 PMI 미지급금액을 손금 내지 비용으로 인식했다고 해서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이를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용역비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초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하면서 대상 거래를 상품유통거래, 상표권 사용거래, 디자인 비용 지급거래로 구분했다가, 2016년경 위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를 변경해 제출했고, 그 무렵 C법인과 사이에 총판지원계약(Complex Sale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했다. 더구나 원고는 특수관계가 있는 C법인과의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의 과세가격과 관련해 구 「관세법」 제37조,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받기 위한 사전조정 신청을 하지도 않은 이상, 정상가격의 승인 여부 및 그 내역을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반드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마) 원고에 대한 제8기 회계연도(2015.12.1.~2016.11.30.)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6.경부터 2015.7.경까지의 각 거래 이후 관세조사가 진행되던 2016년경에 이르러서야 C법인과 사이에 총판지원계약(Complex Sale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영업이익률 범위 내에서 C법인으로부터 IT 지원, 기술지원 및 금융전략, 재고정책, 품질관리 등 포괄적 컨설팅을 제공받는 대가를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의 2013.12.부터 2015.11.까지의 각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원고가 C법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총판지원계약(Complex Sale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바)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거래가 진행되던 기간(2013.6.경~2015.7.경)에는 원고 스스로 C법인과의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를 물품공급거래 내지 재화거래로 명확히 인식하고 PMI 미지급금액을 매출원가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해 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후 PMI 미지급금액을 영업비용으로 인식한 원고의 태도 내지 입장 변화가 어떠한 동기나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피고의 관세조사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회피할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6.경부터 2015.7.경까지 원고가 C법인으로부터 수입물품 판매 등에 관해 여러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매월 어떠한 내용의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6.경부터 2015.7.경까지 실제로 사업지원서비스 관련 용역비용이 항목별로 책정·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PMI 미지급금액은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 관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고, 이와 달리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6.경부터 2015.7.경까지도 C법인의 원고에 대한 사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수입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C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C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를 수입물품 대금에 포함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했다면, 그 전체를 수입물품 대금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원고와 C법인 사이에 2009년경 체결된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유통계약'이라고 한다)과 PMI의 문언 내용 및 실제 그 동안의 회계처리를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의 인식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C법인 사이에 PMI 금액 전체를 수입물품 대금으로 정한 약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반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6.경부터 2015.7.경까지에는 수입물품 대금과 별도로 C법인의 원고에 대한 사업지원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업지원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포함한 PMI 금액 전체를 수입물품 대금으로 봐야 하는 이상, 사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차지하는 부분만을 제외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PMI 미지급금액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거래에 관한 과세가격에 당연히 포함되며,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PMI 미지급금액은 이 사건 유통계약서 제5조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월별 예상실적에 따라 잠정적으로 산정됐다가 연말 회계결산 후 확정되는 이전가격조정액이며, 개별적인 수입물품 가격과 무관하고, 물품수입 당시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실제 지급된 가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PMI의 근거로 든 이 사건 유통계약서 제5.4조 제1문은, "C법인 shall issue order & monthly invoices (payment requests) in arrears for theProducts delivered"라고 규정돼 있는바, C법인은 인도된 물품에 대한(for the Products delivered) 대가로 지급했어야 할 돈 중 나머지 금액(arrears)을 매월 청구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PMI 미지급금액이 상품의 수입과 상관없는 사업지원서비스의 대가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위와 같은 유통계약서의 문언에 배치된다(수입물품의 가격 산정 방식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되는데, 수입물품의 가격 산정이 이전가격조정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정해진 가격이 본질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통계약서 어디에도 수입물품이 아닌 사업지원서비스의 대가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고, C법인이 이를 원고에게 매월 청구해야 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원고는, PMI 중 'Sale value'가 매월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해당 월에 수입된 물품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Sales value' 바로 위에 명시돼 있는 'Commercial goods purchased in the month of 해당 월'이라는 문구를 무시한 것으로, 결국 해당 월의 수입된 물품의 가격 산정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월의 매출액에 연동시킨 것일 뿐이다(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 매출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고, 해당 기간에 이미 판매된 제품의 매출액에 연동하도록 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해외 법인이 제3국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월의 수입물품의 가격을 해당 월의 실제매출액에 연동시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자) 원고는, C법인을 통해 제3국으로부터 받은 사업용 송장이 이 사건 유통계약서 제5.4조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앞서 본 유통계약서의 문언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유통계약서의 상대방인 C법인에게 수입물품의 소유권이 귀속된바 없기 때문에, C법인은 수입물품의 거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유통계약서 제4.3조에 "C법인은 수입물품이 원고에게 인도될 때까지 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그 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라고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C법인에게 귀속된바 없다고 하더라도, C법인이 수입물품에 관한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원고 스스로 2014.8.경 국세청에 쌍방향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원고가 수행할 C법인과의 대상거래를 상품유통거래, 상표권사용 허여거래, 디자인 비용 지급거래 3가지로 구분·기재했고, 특히 상품유통거래에 대해 "원고는 C법인이 유통하는 상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단순 판매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단순 소매업자로서의 적정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취지로 기재했는바, 위와 같은 주장은 위와 같은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도 배치돼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PMI 미지급금액의 「관세법」상 평가

(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되어야 한다.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해당 물품에 대해 조정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관세법」 제27조, 제38조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가격신고 및 납세 신고를 하도록 신고납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의 각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때, 즉 수출 시점에 해당 물품에 대한 대가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는 금액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잠정가격 신고나 사전조정신청, 유효한 가격조정약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이 돼야 하며, 수입자의 영업이익률이 쌍방이 예정한 목표이익률에 미달하거나 초과해 당초 약정된 가격을 사후에 가감조정하는 등 수출입 이후 발생하는 사정 변경에 따른 약정금액의 변동 여부나 그 지급의 완료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승인받은 정상가격 범위의 충족을 위해 당초 지급 약정한 가격에 대한 사후 조정절차를 거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후에 조정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거래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당초 지급약정한 금액 전부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

(나) 원고는 C법인과 체결한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에 따라 매월 C법인이 청구하는 PMI 미지급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PMI 미지급금액은 이 사건 물품의 국내 수출을 위해 C법인이 원고에게 판매하는 때 혹은 수입신고 당시 이미 이 사건 물품의 대가로 약정돼 있던 금액으로서 구매자인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해 판매자인 C법인에 실제 지급해야 할 총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C법인은 E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상가격(영업이익률 4~7.1%) 중 최소값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2013~2015 각 회계연도 말에 실제 매출에 의한 영업실적을 토대로 기여분정산이라는 명목으로 PMI 미지급금액에 대한 가격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고와 C법인 사이에 당초 약정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PMI 미지급금액)을 회계연도 말에 이르러 조정한 것은 수입과정과는 별도로 수입신고 이후 이뤄지는 원고 내부적인 판매유통 과정에서의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영업실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의 조건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와의 직접적인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실제 영업이익률과 목표이익률의 차이를 보상조정(상향조정과 하향조정)한 가격을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회계연도 말에 최종 조정을 거쳐 실제 지급한 PMI 금액만이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한다거나 이와 같은 사후조정을 이유로 PMI 미지급금액 전부가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PMI 미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물품에 대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수출 시점이 아닌 수입물품의 판매 후 확정되는 금액이므로, 구「관세법」제30조 제1항 본문이 아니라 구「관세법」제30조 제1항 단서 및 제5호(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전매·처분 또는 사용해 생긴 수익금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이하 '사후귀속이익'이라고 한다)가 적용돼야 하고, PMI 미지급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면, C법인에 실제 귀속된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돼야 하며, C법인에 지급된 금액 중 수입물품과 무관한 사업지원서비스 제공 대가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관세법」제30조 제1항 단서 및 제5호의 규정 취지는, 사후귀속이익은 확정시기나 지급방법 등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수입물품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가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려는데 있는바(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4565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PMI 미지급금액을 포함한 PMI 금액 전체가 구「관세법」제30조 제1항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고, 이는 수출 시점에 확정되는 금액이므로, 연말에 가격조정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6.경부터 2015.7.경까지 이뤄진 거래 자체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물품의 수입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구「관세법」제30조 제1항 단서 및 제5호가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C법인으로부터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6.경부터 2015.7.경까지에는 (2016년 이후와는 달리)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없으며, 그 사업지원서비스 제공 대가를 포함해 PMI 금액 전체를 수입물품 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 이상, 사업지원서비스 제공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만을 따로 분리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더구나 원고는 상표권 사용 및 디자인 비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추후 확정신고를 한 것과 달리 PMI 미지급금액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관세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잠정가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실제 영업이익률이 목표이익률의 예상범위를 벗어나 사후에 조정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수입 이후 발생하는 사실로서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방식의 가격조정을 유효한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조정된 금액만큼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라) 수입물품의 가격산정은 최우선적으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런데 수입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구「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신고가격인 생산대금, 상표권 사용 및 디자인 지원 비용 외에 PMI 미지급금액을 합산한 총액이라면 구「관세법」 제30조의 수입물품의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원고도 피고가 구「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PMI 미지급금액을 용역거래에 관한 사업지원서비스료로 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돼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원고 주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은 결국 대부분 생산대금, 상표권 사용 및 디자인 지원비용, 운임 등으로만 구성되고 그중 생산대금은 C법인이 제3국 위탁생산자에게 거의 그대로 송금할 하청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C법인이 취할 수 있는 금액은 상표권 사용과 디자인 비용으로만 구성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른다. 이와 같은 금액은 판매자인 C법인의 일반적인 이윤과 통상의 경비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가격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에 의할 경우, 애초에 제1방법인 거래가격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파악해 구「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다른 방법(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은 원고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어 원고가 선뜻 받아들일 만한 방법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와 C법인이 합의한 거래가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면 구「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이 아니라 구「관세법」 제31 내지 35조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PMI가 물품대금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의 거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가격에 해당해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PMI가 물품대금이 아니다"라는 원고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인 이상, 원고와 C법인이 이 사건 유통계약서에서 정한 수입물품 가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구「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지, 구「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가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해 굳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는 C법인이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 관한 PMI를 원고에게 매발행·청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월별 PMI 미지급금액을 해당 월의 수입거래액에 안분해 계산했는바, 이는 "각 수입신

고별 PMI 미지급금액의 개별 산정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의견을 수용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특별히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부

1) 원고의 주장

다른 세관에서 2013년경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됐던 원고의 거래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관세심사를 했음에도 원고에게 PMI와 관련된 미지급금액을 과세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와 같은 관세심사 결과를 신뢰해 PMI 미지급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은 APA 승인과정에서 PMI 미지급금액을 사업지원서비스료로 용역대가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원고는 C법인으로부터 2012.12.경부터 발행받아 오던 PMI에 관한 자료를 2013.5.경 다른 세관의 심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 기간인 2015.8.27.에 비로소 제출했는바, 다른 세관에서 원고에 대한 PMI 미지급금액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 이는 자료 제출에 관한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의 귀책사유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다른 세관의 관세심사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원고에게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 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목적과 산출방법은 내국세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의 그것과 다르므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에 의한 정상가격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PMI 미지급금액을 사업지원서비스료로 봐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한 채 신고했다고 해서 「관세법」상 수입신고 거래가격이 무조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원고는 구 「관세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조정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3) 원고는 2014년경 당초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하면서 대상 거래를 상품유통거래, 상표권 사용거래, 디자인 비용 지급거래로 구분해 명시했다가, 피고가 C법인과의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려 하자 2016년경 뒤늦게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를 변경해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C법인과 사이에 총판지원계약(Complex Sale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국세청장으로부터 PMI 미지급금액을 사업지원서비스료로 사전승인받은 시기는 2016.10.28.로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물품 거래기간 종료일인 2015.7.30.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때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청장으로부터 PMI 미지급금액을 사업지원서비스료로 사전승인받은 사정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시까지 소급해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품 수입신고의 거래가격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는 없다. 원고가 APA 사전승인 신청 당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급적용을 신청해 승인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PMI 미지급금액이 이 사건 물품 수입의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이상, 2년 동안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를 누락한 채 가격신고를 해 부족세액이 발생한 데에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Ⅳ. 대법원 판단

1. 제1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관세법」(2017.12.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은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관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9조의2 제1항은 "관세조사의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제1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등(제4호)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가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직전 또는 조사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대금청구서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자료 등을 요청하게 된 점, 조사종료일 이후에 실시된 조사행위는 누락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거나 원고가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세관공무원이 원고의 사무실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질문조사권 등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 과정에서 강요, 회유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위 조사행위에 임의로 협력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일련의 조사행위를 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세법령의 문언, 체계 및 입법취지 등과 기록에 비춰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조사권의 남용금지 및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이때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

가 구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실시한 조사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조사를 통해 추가로 획득한 자료의 성격, 원고에게 조사결과가 통지된 시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실시한 일련의 조사행위는 기존 조사행위의 연장일 뿐이라고 봐 이 사건 처분이 구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춰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관세법」 제111조의 재조사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제3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관세법」 제327조 제6항은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2 제1항은 "위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해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1.24. 선고 95누17403 판결,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3두606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경정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에 사전 동의했고, 원고 소속 직원은 세관공무원으로부터 경정통지서를 전자적으로 교부받으면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령확인서를 작성·교부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가 구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경정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한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경정통지서 교부 누락이나 경정통지서와 납세고지서

간 세액불일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분에 관해 피고가 2020.4.20.경 관련된 처분을 직권취소했으므로 더 이상 이 부분을 다툴 실익이 없고, 잔존하는 이 사건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춰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관세법」 제327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제4, 5, 6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와 C법인 사이의 유통계약 등에 따라 C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 관한 대금청구서 등을 발행해 청구하고, 원고는 C법인에게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 사건 미지급금액은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의 당사자인 C법인이 위 유통계약 등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발행한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액수이고, 이 사건 미지급금액의 법적 성격이나 원고의 회계처리 방식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이 사건 미지급금액은 원고가 C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대가의 일부로서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춰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제7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다른 세관의 수입신고 심사 당시 C법인으로부터 발행받은 대금청구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다른 세관은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기회가 없었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V. 결어

다국적기업의 수입거래에서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포함범위에 관한 쟁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그룹 내 정책에 따라 수입물품 매매계약과 그에 수반되는 각종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물품의 매매대금 외로 지급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의 본사가 발행한 대금청구서상의 미지급금액을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사업지원서비스료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이 금액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세가격 쟁점에 관한 주장뿐만 아니라 원고는 관세조사기간 경과 후의 과세당국의 추가 자료 요청 및 질문검사, 경정통지서의 전자적 교부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추가 자료 요청 등의 경위,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관세 조사권 남용 등 절차적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해당 판례는 수입거래의 계약당사자 확정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관세조사의 절차적 위법 여부 판단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수입조정과 관련한 한국 수출품의 HSK 코드 분석 ④편
- 구리제품 -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

1. 개요



※ 이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규정하는 한편,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 품목별 관세 인상을 주로 수입조정 조치(Adjusting Imports, 이하 '수입조정'이라 한다)라는 이름으로 발표해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7.30.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구리제품에 대한 수입조정 조치로 5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고문(Proclamation 10962, 이하 '포고문'이라 한다)에 서명했다.

이번 품목분류해설에서는 본지 제2139호(알루미늄), 제2140호(철강), 제2141호(자동차 및 부분품)에 이어 구리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대상물품 상세내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수입조정 대상 구리제품

포고문의 부속서에는 미국의 HTSUS(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United States, 이하 'HTSUS'라 한다) 8단위 기준으로 80개 코드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품목들은 대부분 관세율표 제74류에 포함된다. 제74류에는 구리와 그 합금, 그리고 구리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이 분류된다.

제74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크게 다음의 4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제7401호부터 제7405호** : 구리의 매트(matte)와 그 밖의 구리 야금(冶金)의 중간제품, 구리의 괴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② **제7406호** : 구리 가루와 플레이크(flake)
③ **제7407호부터 제7410호** : 제7403호의 구리(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를 일반적으로 압연, 압출, 인발(引拔)이나 단조(鍛造)하여 얻어진 물품
④ **제7419호** : 그 밖의 제품

위의 첫 번째 그룹은 통상 구리 원료에 해당되는 물품이 포함되며, 광석에서 채취하거나 정제, 합금 또는 웨이스트나 스크랩으로부터의 회수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포고문에서 이 그룹은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포고문은 제74류에서 위의 첫 번째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즉, 제7406호부터 제7409호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며 이 범주에서 우리나라의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이하 'HSK'라 한다) 기준으로 어느 품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 제7406호(수입조정 대상 2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06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406.10	0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7406.10-0000
7406.20	00	층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	7406.20-1000 7406.20-2000

구리가루는 제시된 상태에서 메시(mesh) 구경이 1mm인 제를 통과하는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 제7406호에 분류된다. 가루는 그 자체로서 다른 구리제품의 원료로 사용돼 압축과 소결(燒結)에 의해 베어링(bearing)이나 부싱(bushing)과 그 밖의 많은 기계부분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도 한다. 그 밖에 화학용이나 야금(冶金)용의 시약, 코팅 및 도금, 도전성 잉크 및 페이스트, 안료, 3D 프린팅 소재로도 사용된다. 제7406호의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며 이 호의 HSK 코드는 모두 3개다.

□ 제7407호와 7408호(수입조정 대상 21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407.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프로파일		
	15	-- 중공프로파일	ex	7407.10-0000
	30	-- 기타	ex	7407.10-0000
	50	- 봉	ex	7407.10-0000
7407.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7.21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 프로파일		
	15	--- 중공프로파일	ex	7407.21-0000
	30	--- 기타	ex	7407.21-0000
		-- 봉		
	50	--- low fuming 용접봉	ex	7407.21-0000
		--- 기타		
	70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ex	7407.21-0000
	90	---- 기타	ex	7407.21-0000
7407.29		- 기타		
		-- 프로파일		
	16	--- 중공프로파일	ex ex ex ex	7407.29-1000 7407.29-2010 7407.29-2020 7407.29-9000
		--- 기타		
	34	---- 구리-니켈합금(백동) 또는 구리-니켈-아연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ex ex	7407.29-2010 7407.29-202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38	---- 기타	ex ex	7407.29-1000 7407.29-9000
	40	-- 구리-니켈합금(백동) 또는 구리-니켈-아연합금(양백)으로 만든 봉	ex ex	7407.29-2010 7407.29-2020
	50	-- 기타의 봉	ex ex	7407.29-1000 7407.29-9000
7408		구리의 선		
7408.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8.11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30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9.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ex	7408.11-0000
	60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9.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ex	7408.11-0000
7408.19	00	- 기타		7408.19-0000
7408.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8.21	00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08.21-0000
7408.22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10	-- 금속으로 도포 또는 도금한 것	ex ex	7408.22-1000 7408.22-2000
	50	-- 금속으로 도포 또는 도금하지 않은 것	ex ex	7408.22-1000 7408.22-2000
7408.29		- 기타		
	10	-- 금속으로 도포 또는 도금한 것	ex ex	7408.29-1000 7408.29-9000
	50	-- 금속으로 도포 또는 도금하지 않은 것	ex ex	7408.29-1000 7408.29-9000

제7407호에는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이, 제7408호에는 '구리의 선(wire)'이 분류된다. 이들은 모두 전 길이를 통해 횡단면이 균일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봉과 선의 차이는 직관적으로는 직경이 굵은지 가는지로 구분되겠으나 관세율표 제15부 주에서는 코일 모양(in coil)인지 여부에 따라 코일상의 것은 선으로, 코일상이 아닌 것은 봉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HSK에서는 이들 호의 물품을 재질(합금의 종류)에 따라 최소한으로만 세분하고 있으나 미국의 HTSUS에서는 재질뿐 아니라 용도나 성상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HTSUS 제7407.21.50호는 저연(底煙) 용접봉을 특게하고 있으며, 제7408.22호에서는 선에 추가적인 금속코팅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8단위에서 세분하고 있다.

● 저연(low fume) 용접봉 ●



□ 제7409호와 7410호(수입조정 대상 21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09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409.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9.11		- 코일 모양		
	10	-- 두께 5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11-1000 7409.11-9000
	50	-- 두께 5밀리미터 미만	ex ex	7409.11-1000 7409.11-9000
7409.19		- 기타		
	10	-- 두께 5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11-1000 7409.11-9000
		-- 두께 5밀리미터 미만		
	50	--- 폭 500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19-1000 7409.19-9000
	90	--- 폭 500밀리미터 미만	ex ex	7409.19-1000 7409.19-9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09.2		구리 - 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09.21	00	- 코일 모양		7409.21-1000 7409.21-9000
7409.29	00	- 기타		7409.29-1000 7409.29-9000
7409.3		구리 - 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7409.31		- 코일 모양		
	10	-- 두께 5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31-1000 7409.31-9000
		-- 두께 5밀리미터 미만		
	50	--- 폭 500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31-1000 7409.31-9000
	90	--- 폭 500밀리미터 미만	ex ex	7409.31-1000 7409.31-9000
7409.39		- 기타		
	10	-- 두께 5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39-1000 7409.39-9000
		-- 두께 5밀리미터 미만		
	50	--- 폭 500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39-1000 7409.39-9000
	90	--- 폭 500밀리미터 미만	ex ex	7409.39-1000 7409.39-9000
7409.40	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7409.40-1010 7409.40-1090 7409.40-2010 7409.40-2090
7409.90		기타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10	-- 두께 5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90-1000 7409.90-9000
		-- 두께 5밀리미터 미만		
	50	--- 폭 500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90-1000 7409.90-9000
	90	--- 폭 500밀리미터 미만	ex ex	7409.90-1000 7409.90-9000
7410		구리의 박(箔) ··· <후략>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10.1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11	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10.11-0000
7410.12	0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0.12-0000
7410.2		뒷면을 붙인 것		
7410.21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30	-- 구리층이 적층된 것	ex ex	7410.21-1000 7410.21-9000
	60	-- 기타	ex ex	7410.21-1000 7410.21-9000
7410.22	0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0.22-1000 7410.22-9000

제7409호에는 구리제의 판, 시트나 스트립이, 제7410호에는 구리제의 박(foil)이 분류된다. 판, 시트, 스트립과 박은 균일한 두께를 가지며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인 평평한 제품을 뜻한다. 구리나 알루미늄은 금과 은 다음으로 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매우 얇은 시트상의 제품으로 가공이 가능하고 이러한 시트상 물품 중 두께 0.15mm 이하인 것이 제7410호의 박으로 분류된다.

제7409호와 제7410호에서 HTSUS는 HSK에 비해 훨씬 상세하게 세분류돼 있다. 다만, HSK에서는 규정한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의 박을 특게하고 있으나 HTSUS는 이러한 물품을 따로 세분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 호에 속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411호와 7412호(수입조정 대상 9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11		구리로 만든 관(管)		
7411.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10	- 무계목의 것	ex	7411.10-0000
	50	- 기타	ex	7411.10-0000
7411.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1.21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10	-- 무계목의 것	ex	7411.21-0000
	50	-- 기타	ex	7411.21-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11.22	00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7411.22-1000 7411.22-2000
7411.29		- 기타		
	10	-- 무계목의 것	ex ex	7411.29-1000 7411.29-9000
	50	-- 기타	ex ex	7411.29-1000 7411.29-9000
7412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7412.10	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12.10-0000
7412.20	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2.20-0000

제7411호와 제7412호에는 구리제의 관과 관 연결구류가 각각 분류된다. 이들 호의 HTSUS는 HSK에 비해 더 세분화돼 있으며 특히 무계목(seamless) 관을 특게하고 있다. 무계목이란 판 또는 시트의 양끝을 구부린 후 서로 용접해 둥근 관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봉상의 물품의 중앙을 천공하거나 용융된 금속을 압출하는 방식 등으로 만들어 용접 이음매가 없는 관을 말한다. **제7411호와 제7412호에 속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413호와 7415호(수입조정 대상 10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13.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 연결구가 부착되지 않고 제품으로 되지 않은 것		
	10	-- 연선	ex	7413.00-0000
	50	-- 기타	ex	7413.00-0000
	90	- 연결구가 부착되었거나 제품으로 된 것	ex	7413.00-0000
7415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구리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	00	못과 압정, 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1000 7415.10-9000
7415.2		나선가공을 하지 않은 그 밖의 물품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15.21	00	-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7415.21-0000
7415.29	00	- 기타		7415.29-0000
7415.3		그 밖의 나선가공한 물품		
7415.33		-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05	-- 목재용 스크루	ex	7415.33-0000
	10	-- Muntz 메탈 또는 옐로우 메탈	ex	7415.33-0000
	80	-- 기타 스크류, 볼트와 너트	ex	7415.33-0000
7415.39	00	- 기타		7415.39-0000

제7413호와 제7415호에는 구리로 만든 대표적인 범용성 부분품이 분류된다. 이들 호의 HTSUS 세분류체계는 크게 복잡하지 않다. 다만 HTSUS 제7415.33.05호에서 먼츠 메탈(Muntz metal) 또는 옐로우 메탈(yellow metal)로 불리는 구리-아연 합금제의 스크루, 볼트와 너트가 특게돼 있다. 제7414호와 제7415호에 속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418호와 7419호(수입조정 대상 12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18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후략>		
7418.10	00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418.10-1000 7418.10-9010 7418.10-9020 7418.10-9030 7418.10-9091 7418.10-9099
7418.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10	- 구리-아연 합금(황동)의 것	ex ex	7418.20-1000 7418.20-2000
	50	- 기타	ex ex	7418.20-1000 7418.20-2000
7419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19.20	00	- 주조·주형·압착·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19.20-0000
7419.80		- 기타		
		-- 구리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 그릴, 망, 구리로 만든 익스팬디드메탈		
		--- 클로스(cloth)		
	03	---- 종이 제조용 기계에 사용하기 적합한 장망 초기지 와이어	ex	7419.80-1010
	06	---- 기타	ex	7419.80-1010
	09	--- 기타		7419.80-1090
	15	-- 사람이 포켓이나 핸드백에 휴대하기 적합한 종류의 용기	ex	7419.80-9000
	16	-- 구리 스프링		7419.89-2000
	17	-- 체인과 그 부분품	ex	7419.80-9000
		-- 기타		
	30	--- 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ex	7419.80-9000
	50	--- 기타	ex	7419.80-9000

제7418호에는 구리로 만든 주방용품, 식탁용품, 가정용품 등이 분류되며, 제7419호에는 제74류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구리제품이 분류된다. 제7419호에는 구리제의 일부 범용성 부분품(체인, 스프링 등)도 포함된다. 이들 호에 속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8544호(수입조정 대상 4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544	절연전선, 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 <후략>	
<생략>		
8544.4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544.42	- 접속자가 부착된 것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10	-- 모듈화된 전화기용 접속자가 부착된 것	ex ex ex	8544.42-1010 8544.42-2010 8544.42-9010
		-- 기타		
	20	--- 전기통신용의 것	ex ex ex	8544.42-1010 8544.42-2010 8544.42-9010
	90	--- 기타		8544.42-1090 8544.42-2090 8544.42-9090
8544.49		- 기타		
		--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10	--- 전기통신용의 것		8544.49-1011 8544.49-2011 8544.49-9011
<생략>				

제8544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과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절연도체[편조(braid)·스트립(strip)·봉(bar) 등]가 분류된다. **도체의 가장 일반적인 재료는 구리이며, 제8544호에 분류되는 개별 물품 중 구리의 함량이 가장 높은 물품은 아마도 제8544.11호의 구리제 권선용 와이어(winding wire)일 것이다. 그러나 권선용 와이어는 특이하게도 포고문상 수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구리제의 권선용 와이어(HS 제8544.11호) ●





제8544호에서 수입조정 대상인 물품은 소호 제8544.42호(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전기도체로 접속자가 부착된 것)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과 소호 제8544.49호(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전기도체로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것)의 물품 중 전기통신용의 것(전압 80볼트 이하)만 해당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사료 속 미량광물질 '글리신 아연 배위화합물'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사료에 포함되는 미량광물질은 가축의 성장, 생산성 향상,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내성 강화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필수 영양소다. 미량광물질에는 칼슘, 인,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칼륨, 구리, 요오드, 망간, 셀레늄, 아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료에는 무기염(황산염, 산화물, 탄산염 등)으로 미량광물질을 첨가한다. 그러나 무기염은 위장관에서 다른 성분과 쉽게 결합·불용화돼 흡수율이 낮아지고 일부는 배설돼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물질을 아미노산(글리신, 메티오닌 등)과 킬레이트* 형태로 결합해 공급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상호작용 억제, 안정성 강화 등의 기능이 개선된다.

* 킬레이트(Chelate) : 하나의 금속이온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배위자가 결합해 고리구조를 형성한 배위화합물

이번 호에서는 사료로 이용되는 글리신 아연 배위화합물에 관한 품목분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글리신과 아연의 배위화합물인 백색 과립상으로 '미량광물질을 주로 한 사료첨가제'인 제2309.90-3030호로 신고했다.

일반적으로 글리신 아연 배위화합물의 경우는 국내 「사료관리법」상 '단미사료'에 해당하고 '미량광물질류-아미노산킬레이트'에 해당해 품목분류를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는 제2309호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제2309호 해설서에는 제외규정이 있으며, "(f) 제29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리신과 아연의 배위화합물 100%로 이뤄진 본 물품은 제29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제230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2.4호에는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 "(D) 아미노산(amino-acids)과 그 에스테르(esters)와 이들의 염 : 이들

화합물은 한 개 이상의 카르복시산 관능기와 한 개 이상의 아민 관능기를 가진다. … <중략> … 아미노산의 에스테르·염과 치환유도체로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3) 글리신(glycine)(아미노아세트산 ; 글리코콜)(H2NCH2COOH) : 크고 무색의 일정한 모양의 결정체로서 유기 합성 등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29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음에 열거한 염은 제6부의 주 제1호와 제28류의 주 제2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각각 다음 규정에 따른다. … <중략> … **(3) 배위화합물(제11절이나 제294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즉, 배위화합물의 경우 금속과의 결합을 분리해 생각했을 때 형성된 조각인 아미노산이 분류되는 제2922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물품은 글리신과 아연 금속이온이 배위결합을 이루고 있는 배위화합물로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해 형성되는 조각인 아미노산이 분류되는 호인 제2922.49-9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FEED ADDITIVES	2309.90-3030 (A 5%)	Glycine-zinc chelate	2922.49-9000 (C 6.5%)

해열·해독효과로 멸종위기 '코뿔소 뿔'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야생 코뿔소를 밀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코뿔소 뿔에 방사성 물질을 주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남아공 위트와테르스탄트 대학 연구진은 코뿔소 뿔에 저준위 방사성 물질을 주입하면 코뿔소에게는 무해하면서 전 세계로 운반되는 밀수된 뿔을 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코뿔소 뿔에 방사성 물질을 주입하면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국경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지난 6년간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으며, 코뿔소 20마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코뿔소에게 안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통해 코뿔소 뿔에 방사성 물질을 주입하면 6m 크기의 선적 컨테이너 내부에서도 뿔을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뿔소(무소)의 뿔 서각(犀角)은 열을 내리고, 정신을 진정시키며, 해독 작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아토피 피부염, 잦은 코피 등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약재로도 쓰인다.

남아공은 전 세계에서 코뿔소 개체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매년 코뿔소 수백 마리가 밀렵당하고 있다. 남아공에 서식하는 흰코뿔소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서 '준위협', 검은코뿔소는 멸종위기에 해당하는 '위급(CR)' 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각은 소의 뿔인 우각, 물소 뿔인 수우각으로 대체되고 있다.

현재 코뿔소 뿔은 관세율표 제0507호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에 분류된다.

관세율표 제5류 주 제3호에서는 "이 표에서 코끼리·하마·바다코끼리·일각고래·산돼지의 엄니, 코뿔소의 뿔과 모든 동물의 이는 아이보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0507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직사각형·막대 모양·튜브나 그 밖의 반제품 형태로 절단한 물품과 주형으로 찍어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관세율표 제9601호 등에 분류된다.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45호_2025.9.1.

최신개정법령

공고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입법예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99, 2025.8.27.)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과 이행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일시 : 2025년 9월 12일(금) 15:00~16:30

2. 장소 : 서울 코리아나 호텔 (스테이트룸, 7층)

3. 주요 논의 내용

- ㅇ 한·아세안 FTA 개선 개요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주제 관련 발표 및 패널 발언
- ㅇ 기관/업계/전문가 및 개인의 의견 청취

* 주제 발표자 및 발언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

4. 참가신청

- ㅇ 공청회 방청이나 의견 제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25년 9월 9일(화)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전화 : 044-203-5757 / 이메일 : betop@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과 관련하여 의견 제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신청과 함께 서면의견을 별지에 작성하여 상기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 (전화, 이메일)	
소속 및 직위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구분	방청 ( ) 의견제시 또는 질의 ( ) 서면의견제출 ( )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의견 요지	
질의 요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입법예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603, 2025.8.2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 등 서식 정비를 통해 조사 신청의 편의성 향상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조사신청서 서식과 기재 항목 간소화로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작성 부담을 경감(안 제5조 제1항, 별지 제1 내지 1-11호 서식)

나. 서식 하단에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예시 제시, 첨부 자료 목록을 추가해 자료 제출의 누락을 방지(안 별지 제1 내지 1-11호, 제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9월 22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조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 전자우편(이메일) : utid@korea.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팩스 : (044) 203-4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원부 불공정무역조사과(전화 : 044-203-5887, 전자우편 : utid@korea.kr)로 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① 논문 원고
② 논문투고 신청서
③ 연구 윤리 확인서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 의 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2025 개정판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1 최신 기준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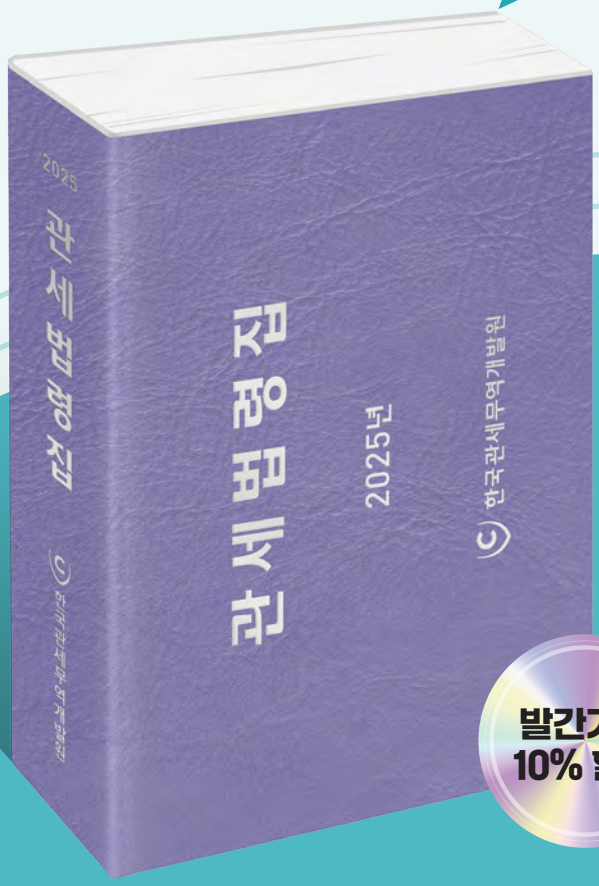
- 관세/무역 관련 법령
- 2025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반영
- 고시 : 97개 → 82개
- 훈령 : 116개 → 92개
- 지시·지침 : 1,333개 → 501개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위임조문 3단비교 편집)



발간기념
10% 할인

65,000원 → **58,500원**

2025년 6월 넷째주 발간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